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77
----------	-------

발의연월일 : 2026. 2. 24.

발 의 자 : 박성훈 · 송언석 · 박충권
김기웅 · 김위상 · 김성원
김승수 · 서명옥 · 윤영석
강명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사업주 등 사용자가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

법률 제 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집중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0조(채납자료의 제공) 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2조에서 같다)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u>신용정보집중기관</u>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납자의 인적사항 및 채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채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채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채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제110조(채납자료의 제공) ① ----- ----- ----- ----- ----- ----- <u>신용정보집중기관</u>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채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 및-----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